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규정은 정기검사의 대상을 대규모 옥외탱크저장소로 한정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문제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위험물 이송배관이나 위험물 취급탱크 등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제조소등도 정기검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는 기술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그 효과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범위를 기술검토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며, 위험물의 성상 판정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과 구분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확대(안 제17조)

정기검사의 대상을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한정하던 것을 지하시설의 위험도, 정기점검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물 이송배관이 지하에 매설된 제조소·일반취급소·이송취급소 등까지 추가함

나.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안 제22조제2항제2호)

종전에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허가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일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양이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일 때에도 해당기관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함.

다.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 및 판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0킬로그램·100킬로그램·200킬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위험물의 품명을 기준으로 지정수량을 결정하였으나, 지정수량 200킬로그램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에서 200킬로그램을 삭제하고, 지정수량의 판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2. 위험물 배관이 지하에 매설된 이송취급소
3. 300미터를 초과하는 위험물 배관이 지하에 매설된 제조소, 일반취급소 또는 주유취급소
4. 5만리터 이상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지하에 매설된 제조소, 일반취급소 또는 주유취급소

제20조제1호 중 “선임된”을 “선임된 자 또는 선임되려는”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 하려는 자”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가목 중 “3천배”를 “1천배”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로민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아이오딘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킬로그램
		9. 디크로뮴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속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	50킬로그램

		외한다)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제4류	인화성 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제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 10킬로그램 제2종 : 100킬로그램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 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별표 1 비고 제3호 전단 중 “유황은”을 “황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황화린 · 적린 · 유황”을 “황화인 · 적린 · 황”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16호 본문 중 “클레오소트유”를 “크레오소트유”로 하고, 같은 비고 제19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시험 결과에 따라 위험성 유무와 등급을 결정하여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별표 1 비고 제20호가목 중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을 “인산수소칼슘2수화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를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과산화지크밀”을 “과산화다이쿠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을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를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2호

·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후단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완공검사에 합격한 제조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및 이송취급소의 관계인은 해당 시행일부터 2년 내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완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제조소·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 (생 략)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 · 비상 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기 위 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 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 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 ----- ----- ----- ----- ----- ----- -----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③-----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제2호의 경우 : 「화재	2. ----- :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

1.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2. 위험물 배관이 지하에 매설된 이송취급소
3. 300미터를 초과하는 위험물 배관이 지하에 매설된 제조소, 일반취급소 또는 주유취급소
4. 5만리터 이상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지하에 매설된 제조소, 일반취급소 또는 주유취급소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생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

---.

1. ----- 선임된 자 또는 선임되려는 -----
2. (현행과 같음)
3. -----
-----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려는 자
4. -----
-----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려는 자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1천배 -----

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 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 사 나. (생 략) 3. (생 략) ③ (생 략)	----- ----- ----- -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연 락 처	(044) 205 - 7482